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7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07	한정애의원	2024. 6. 21.	2024. 8.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77	박희승의원	2024. 7. 19.	2024. 8.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95	박상혁의원	2024. 12. 17.	2025. 2.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13	강선우의원	2025. 4. 10.	2025. 8.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73	정혜경의원	2025. 8. 14.	2025. 9.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09	한창민의원	2025. 8. 18.	2025. 9.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40	남인순의원	2026. 1. 27.	2026. 3. 10.

나. 2026. 3.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 2. 1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715호)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 및 제434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2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434회국회(임사회·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4. 29.)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

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 지침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③ (생략) ④ <u>제2항제3호</u>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2항제3호 및 제7호</u>-----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u> ② (현행과 같음)
---	---